

(주)신한금융그룹 · 로컬브랜딩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2024년 『지역을 살리는 로컬메이트 공모사업』 안내**

(주)신한금융그룹과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지역이 스스로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의 취지에 동참하여, 2023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10개 지역을 창업과 참신한 생각 실현으로 함께 성장시킬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지역을 살리는 로컬메이트 공모사업

□ 사업기간 : 선정('24.5월말) 후, '24. 11.30까지\* 완료

\*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성과자료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단위 사업별 공모/공고	신청·접수	심사·선정	대면OT	중간 성과공유회	최종 성과공유회
('24.3.29.)	(~'24.4.29.)	(~'24.5월)	'24.05.24(금)	('24.7월)	('24.11월)

□ 지원범위 :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10개 지역 생활권(세부범위 첨부1)\*

\* 해당 공모는 생활권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브랜딩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공모 지원범위를 지역의 일부 생활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범위 반드시 확인·신청

□ 지원대상 : 10개 지역 생활권(첨부1)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예비 창업자 또는 기업 및 단체

□ 추진방식 : 2개 분야\* 공개공모를 통해 신청자 접수 → 타당성 등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실행자금 지원

\* 2개 분야 : 세부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 자격은 후면 참고

## 2

##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 □ 지원내용

유형	주요내용	지원금액
<b>유형 ①</b> <b>지역가치 제고</b> <b>아이디어 실현 지원</b>	- '로컬브랜딩 사업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지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아이디어 <b>실행자금 지원</b>	최대 5천만원
<b>유형 ②</b> <b>신규 창업 점포</b> <b>인테리어 지원</b>	- '로컬브랜딩 사업지역' 내 예비창업자의 창업 점포 <b>인테리어 비용 지원</b>	1개소당 2천만원

#### ○ 유형 ① : 실행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비목	세목	지원내용
직접비	사업추진비	법인, 지식재산권, 시험·인증,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관련 소요되는 비용
	외주용역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수행하는 비용
	재료비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
	기자재 임차료	사업과 관련한 기자재 임차·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자재 구입비	사업 관련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
	홍보·마케팅비	제품·서비스·사업 홍보 및 광고비용
간접비	전문가 활용비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지급 비용
	회계 정산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정산비용

#### ○ 유형 ② : 실행자금 1개소당 2천만원 지원

: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신규 점포 인테리어 작업에 필요한 비용 2천만원 지원. 단, 지출 전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이외 세부 사항은 선정 후 회계 지침을 통해 안내 예정

####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1) 사업비는 법인·개인 사업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통해서 지급
- 2) 사업비 지출은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함  
\* 증빙 예)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 3)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 4) 민법 제767조 상의 대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5)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는 불가함
- 6) 아이디어 실행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지출해야 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지원자격

- (공통사항 01) 신청 생활권의 '로컬브랜딩 활성화 협력사업'을 사업기간 내 적극적으로 추진 및 완료하고, 사업기간 내에 발생한 주요 운영성과의 공유가 가능한 개인 혹은 단체(기업, 기관 등)
- (공통사항 02)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을 위한 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기업, 기관 등)
- 유형별 주요 자격 사항

❖ 2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동일 신청자가 중복신청 불가)

- 유형 ①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 지원

지원자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업지역이 포함된 광역지자체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및 기업*</li> <li>또는 2개 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li> <li>*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고유번호증 등 보유 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및 기업 증빙 서류 제출 필수</li> <li>※ 후면 3. 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참고</li> <li>· 개인 자격으로 지원은 불가하나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능</li> </ul>

- 유형 ② 신규창업 점포 인테리어 지원

지원자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역(첨부1.) 내 점포에서 창업 및 2년 이상 영업활동 계획이 있는 만 49세 미만의 예비창업자*</li> <li>* <b>예비창업자</b>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창업자 또는 업종 변경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자 단 업종 변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운영 중인 점포 리모델링 지원 불가</li> <li>- 해당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과 협업이 용이한 업종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li> <li>- 첨부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07.31.까지 영업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공간(점포)의 매입 또는 2년이상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수</li> <li>· '24.09.30.까지 신규점포 인테리어 작업 완료 필수</li> <li>· '24.10.30.까지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영업 개시 완료 필수</li> </ul>

### 3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9일(금) 14:00 ~ 4월 29일(월), 14:00까지

□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주소 : <https://gwon.net/> 로컬메이트

□ 신청서류 ※ 신청서식은 별도 첨부된 '2. 로컬메이트 참여신청서' 참고

- 유형 ①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 지원

구 분	제출서류명	비고
필수1	(서식1) 사업신청서	HWP
필수2	(서식2) 사업제안서	
필수3	A.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B.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단체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A, B 중, 1개만 제출 가능 ※ 공고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PDF 파일
필수4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선택1 (가점)	'23~'24년 해당 '로컬브랜딩 사업지역'과 적극적으로 협업한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예시) 용역계약서, (사업지역과의) 업무협약서 등	
선택2 (가점)	기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관련된 주요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유형 ② 신규창업 점포 인테리어 지원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필수1	(서식3) 사업신청서	HWP
필수2	(서식4) 사업계획서	
필수3	주민등록등본(모집 공고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PDF 파일
필수4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선택1 (가점)	'23~'24년 해당 '로컬브랜딩 사업지역'과 적극적으로 협업한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예시) 용역계약서, (사업지역과의) 업무협약서 등	
선택2 (가점)	기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주요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규 창업 점포 사업자등록증 '24.10.30.까지 제출 필요

## 4

## 평가 및 선정발표

□ 평가 절차 ※ 추진 일정은 공모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역별 서류 및 온라인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심사) 사업계획(제안)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반영)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자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1차 선별
  - 평가 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하거나 신청서류 누락, 결격사유 확인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서류 상 가점은 서류심사 시에만 반영되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불인정
  - 서류심사 결과는 대면심사 대상자에만 통보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만 해당되며, 대상자의 사업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이며, 대상자는 영상회의를 통한 발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카메라, 마이크 등)
  - 대상자는 사업계획(제안)서를 기반으로 주요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발표(발표시간 : 유형① 20분 이내, 유형② 15분 이내)
  - 발표심사 시간 등 세부사항은 추후 서류심사 통과자에게 개별 안내
- (기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 중 또는 최종 선정 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지표

○ 유형 ①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 지원

번호	평가항목 (배점)	주요내용
1	지역성·타당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 대한 이해도</li> <li>• 지역의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성</li> <li>• 해당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과의 연계성 및 협업 가능성</li> <li>•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및 기여 방안</li> </ul>
2	성장·지속 가능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디어 제안 동기 및 해당 제안사업의 필요성</li> <li>• 지원 종료 후 제안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추진전략</li> <li>• 제안사업의 경제적 가치 환산 및 사업화 전략</li> <li>• 자금소요 및 집행계획 및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li> </ul>

○ 유형 ② 신규창업 점포 인테리어 지원

번호	평가항목 (배점)	주요내용
1	지역성·타당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상권) 및 자원에 대한 이해도 및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li> <li>• 해당 업종의 지역 내 신규 창업 필요성</li> <li>• 점포 인테리어 및 운영계획</li> </ul>
2	성장·지속 가능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동기 및 추진의지</li> <li>• 지원 종료 후 창업의 지속 가능성 및 추진전략</li> <li>• 인테리어 등 자금소요 및 집행계획</li> </ul>

○ 가점 : 유형①, ② 동일 적용

번호	주요내용	가점
1	'23~'24년 해당 '로컬브랜딩 사업지역'과 적극적으로 협업한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2	(단체·법인의) 본점의 소재가 사업지역의 '기초지자체' 내에 있는 경우	2
3	사업 아이템과 관련한 교육 및 기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
4	유사 창업경력 서류	1

※ 가점서류 인정범위 : 제출서류는 최근 2개년('22.1.1일 이후~) 자료

※ 번호별 1번만 가점 적용(예, 유사 창업경력 서류 2개 제출→가점 1점)

□ 최종 선정 및 발표

○ (최종 선정) 서류심사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발표 심사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평가 결과, 신청자의 역량이 본 사업의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선정 예정규모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음
- 유형①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내 차등 배정

○ (선정자 발표) 2024. 5. 17.(금) 18시, 선정자 개별 안내

##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통한 제출 외, 대면 및 메일 제출 불가
- 접수된 사업계획(제안)서 등 구비서류는 수정·반환 불가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선정자는 공고문, 세부 관리기준,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사업 신청은 본 사업 실제 수행자(단체, 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 심사·평가 중 유의사항

- 지원자격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제안)서의 내용 허위 기재, 누락이 확인된 경우, 심사 중에도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발표심사 시 발표는 신청자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공모 사업 최종 선정자는 2024년 05월 24일(금), 신한 익스페이스 (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예정되어있는 대면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운영기관 (함께일하는재단)에 반드시 사전에 이를 공유하고 승인을 받아야함
-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 기재,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선정·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추진 중에도 주관기관이 수사·중간·최종 점검을 통해 당초 사업제안(계획)서와 상이, 사업기간 지연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사전에 주관기관((재)함께일하는재단)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운영 지침 및 사업비 관리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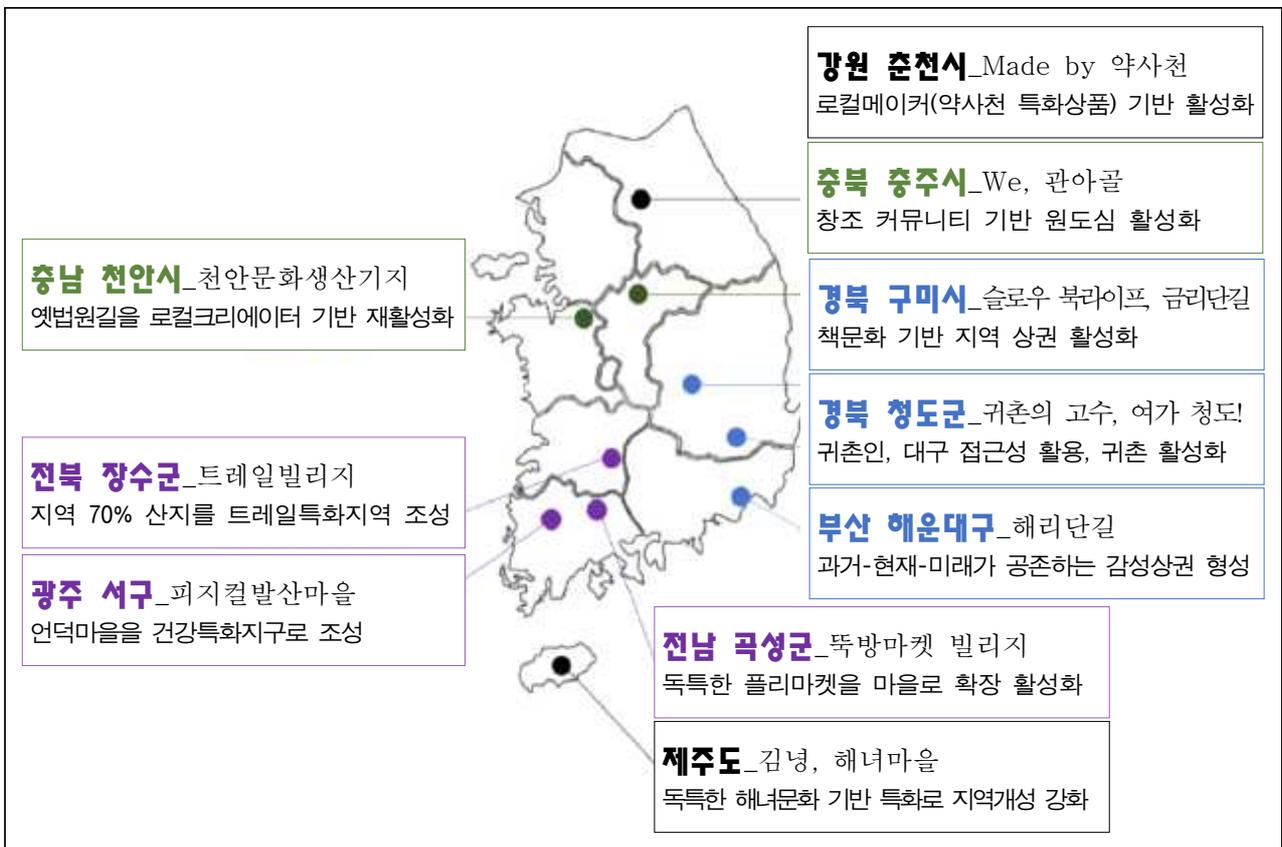
## 6 문의처

□ 문의처 : (재)함께일하는재단 창업육성팀 ☎ 02-330-0703~4

< 지원범위 적용 >

- ◆ 유형 ①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 지원 : 아이디어 실현 대상지 범위
- ◆ 유형 ② 신규창업 점포 인테리어 지원 : 신규 창업하는 점포 위치

□ 10개 지역 및 로컬브랜딩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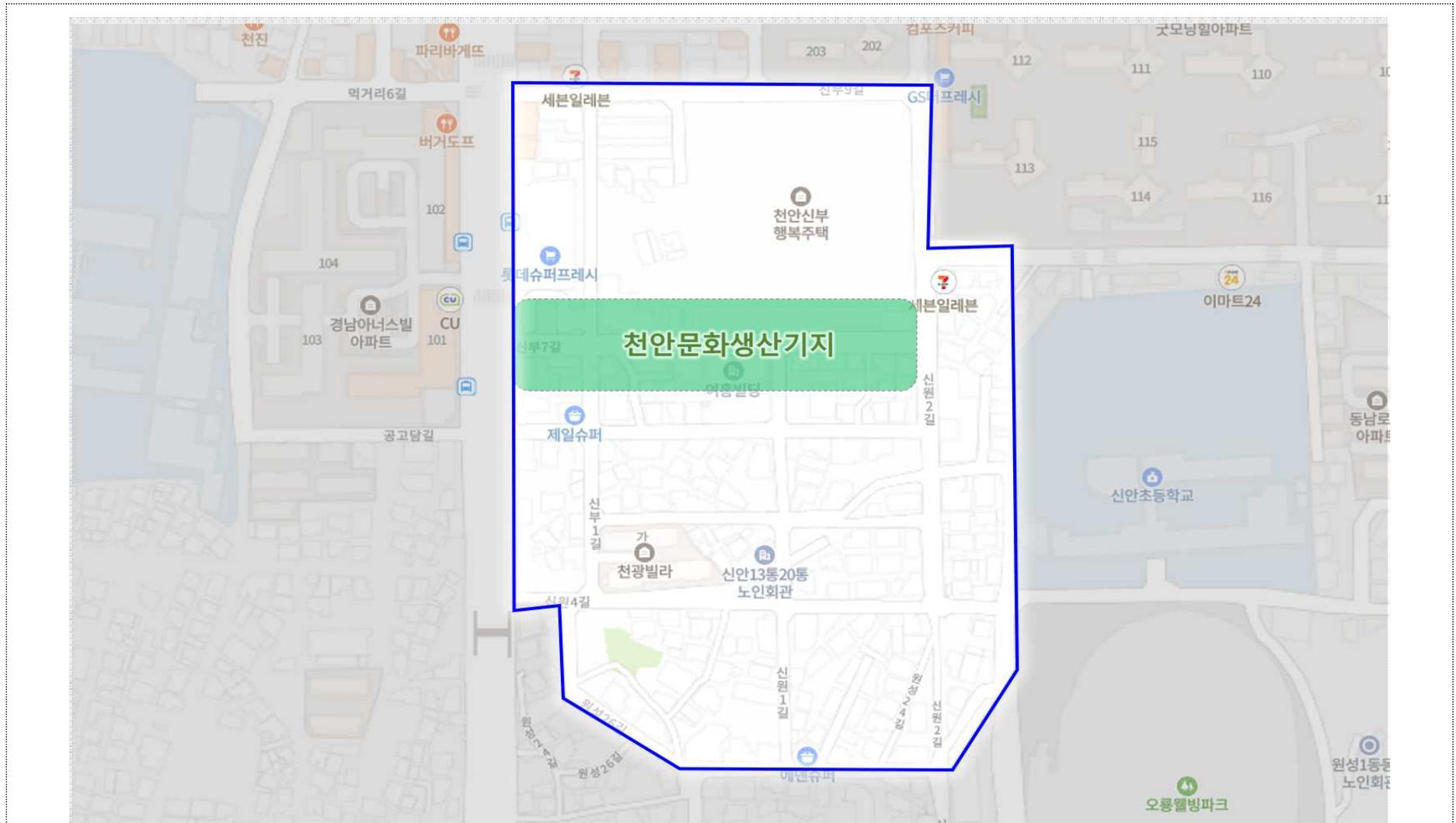


□ 유의사항

- 해당 공모는 '생활권 단위'로 진행 중인 로컬브랜딩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공모 지원범위를 지역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지역 내 생활권 일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세부범위 반드시 확인 후 공모 신청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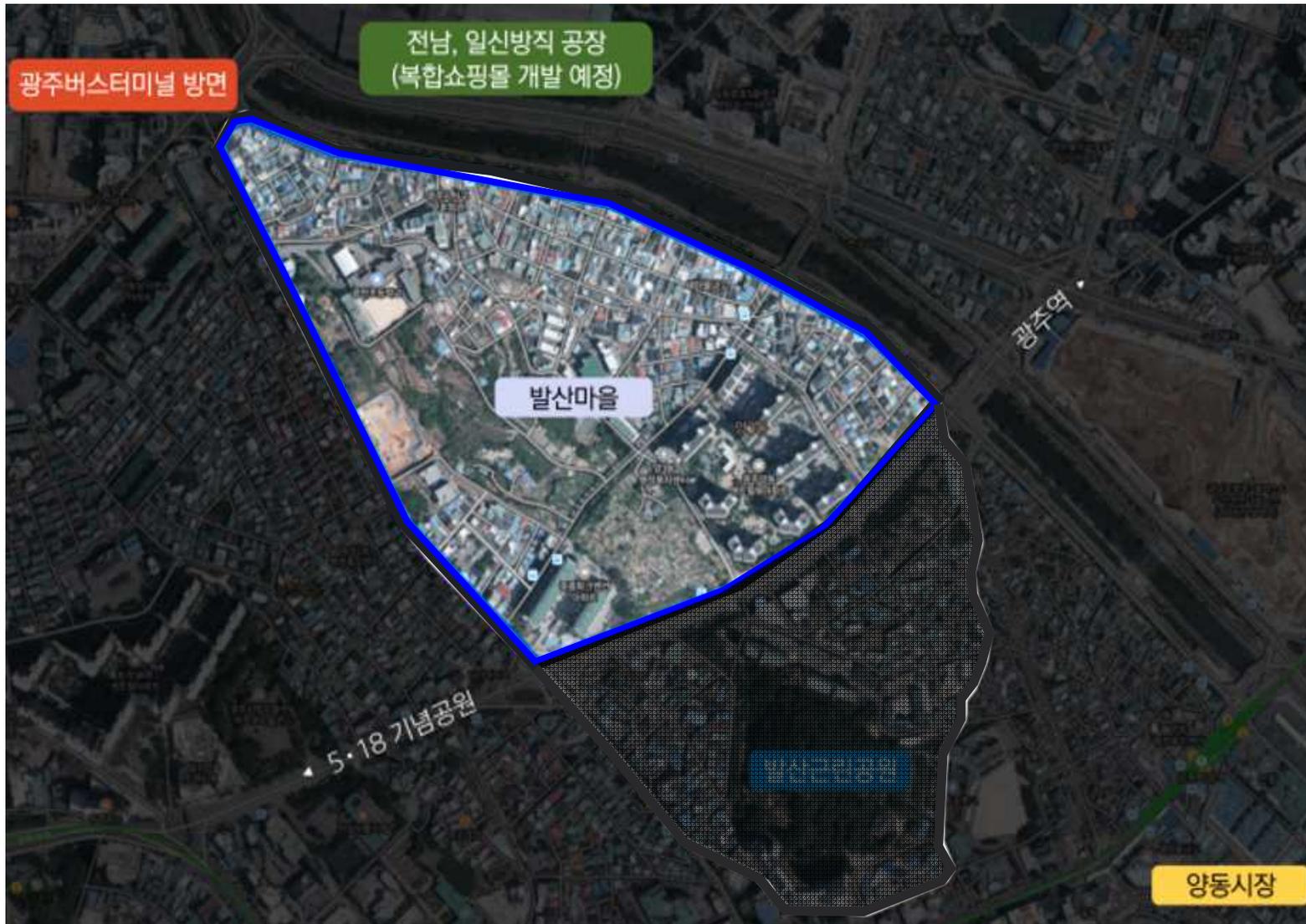
□ 지역별 세부 범위 : 지도상 파란선 내부

○ 충남 천안시 : 동남구 신부동 76-1번지 일원





- 광주광역시 서구 : 천변좌로108번길 및 발산로 일대





○ 충북 충주시 : 관아1길 20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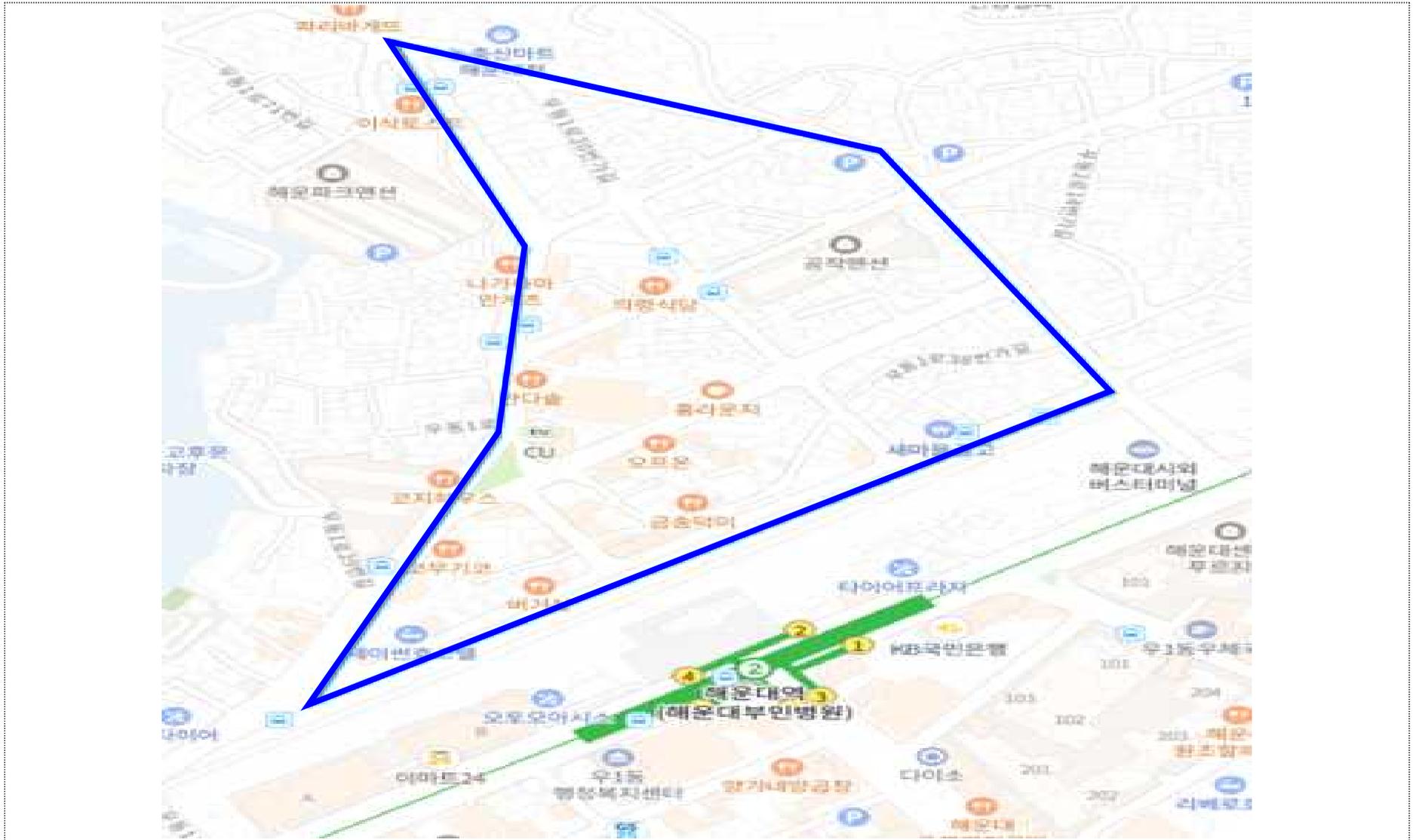




○ 경북 청도군 : 청도읍 고수생활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우동 510 일원 (해리단길)



○ 전남 곡성군 : 곡성읍 상업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구좌읍 김녕리 일원



**첨부2**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